

	<h2 style="margin: 0;">직원인사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5-1-47		
		제정일	2021. 02. 25.		
		개정일	2021. 02. 25		
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직원인사 규정」에 근거하여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2. 기타 직원인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5조(회의 소집 등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) ①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의결된 내용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-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알고 있는 회의내용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25일 부터 시행한다.